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4가합107246 판결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건	2024가합107246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송충열 변호사 이인석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영열
변론종결	2026. 5. 15.
판결선고	2026.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21,298원 및 이에 대한 2024. 7. 16.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와 C는 각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 2) 피고¹⁾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D가 개설한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 1) 원고는 2023. 12. 21. D에게 60억 원을 변제기 2024. 1. 31., 이자 연 6%로 하여 대여하였다.
- 2) 원고와 D는 같은 날 E법무법인을 통하여 위 대여사실 및 D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와 D의 담보대출약정 체결

C와 D는, 2024. 2. 2. C는 D에게 64억 원을 변제기 2024. 2. 8., 이자 월 1.5%로 하여 대여하고 D는 C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D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주식과 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C에 대한 피고의 질권설정승낙

- 1) D와 C는 2024. 2. 2. 피고에게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하였다. D와 C는 2024. 3. 13. 피고에게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하였다.
- 2) D와 C가 피고에게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신청서와 피고가 C에게 교부한 질권설정승낙서의 각 내용 중, '질권설정 내용' 부분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빈칸은 공란으로 된 부분이다).

[표 1] 질권설정 내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명	D
질권설정 종목		질권설정 금액	
질권설정 수량		질권설정 유형	계좌질권
종목만기일		매매허용 여부	가능

3) 피고는 2024. 2. 2.과 2024. 3. 13. 각 C에게 질권설정증낙서를 교부할 즈음 피고의 전산상 질권설정·해지내역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다(빈칸은 공란으로 된 부분이다).

[표 2] 질권설정·해지내역

처리일자	처리구분	계좌번호	상품 유형명	종목코드	설정 수량	등록질 여부	질권자명	주소
변제기일	종목질권 상태	계좌명	매매 허용	종목명	해지 수량		실명확인번호	전화번호
2024. 2. 2.	등록	(계좌번호 1 생략)	위탁상품		0		C	(주소 기재)

3000. 12. 31.		D	가능		0		(주민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기재)
2024. 3. 13.	등록	(계좌번호 1 생략)	위탁상품		0		C	(주소 기재)
3000. 12. 31.		D	가능		0		(주민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기재)

마.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명령의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4. 29.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신청(청구금액 6,121,967,213원)에 따라,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D, 계좌관리기관을 피고,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하여, D가 위 각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고, 위 각 계좌관리기관은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D는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타채110190). 위 압류명령의 결정문은 2024. 5. 3. 09: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주식 매도 등

1) 피고는 2024. 5. 3. 09:00부터 11:04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있는 피고의 I 주식회사<2> 발행 주식 2,846,8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거래대금 1,141,303,49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가 위 시간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주식매각 내역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24. 5. 13. 이 사건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탁금 3,774,258,045원이 있고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C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의 제3채무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피고의 C에 대한 추심금 지급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5. 14. 이 사건 질권을 기초로 한 C의 신청(청구금액 3,760,034,800원)에 따라, 채권자를 C,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탁금 반환청구채권등을 압류하고, 피고는 D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D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채11170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은 2024.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24. 5. 2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탁금 3,774,258,045원이 있고 이 사

건 계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제3채무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24. 5. 21. C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예탁금 중 C의 청구금액인 3,760,034,8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5. 30. 이 사건 압류명령의 결정 주문을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 주식 등 및 예수금, 기타각종 명칭의 예금을 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들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및 예수금, 기타 각종 명칭의 예금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 이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 및 예수금, 기타 각종 명칭의 예금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 등록의 신청이나 이체, 추심 그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경정결정은 2024.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6.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수금 기타 각종 명칭의 예금에 관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심명령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채113191). 위 추심명령의 결정문은 그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24. 6. 5.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잔여 예탁금 14,223,2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 3, 6, 11, 12,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 이 사건 계좌에는 예탁금 3,774,258,045원이 존재하였고, 위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것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써 위 3,774,258,045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3,760,03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돈 중 500,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C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직 추심하지 못한 3,760,034,8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돈 중 500,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되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C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C에게 지급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질권의 설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좌는 D가 피고를 통하여 개설한 증권계좌이고, D는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주식과 예탁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주식 및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질권의 설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여부

가) 관련 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31조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6조는 제1항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자등록을 신청할 시 밝혀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제1호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을 들고 있다.

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은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즉 전자증권법 제2조 제4호의 '전자등록주식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더하여 위 관련 규정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전자증권법 제31조에서 정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전자증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 관리기관이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려면 그에 앞서 질권설정자가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D와 C가 2024. 2. 2.과 2024. 3. 13. 각 피고에게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신청서는 그 명칭이나 내용에 비추어 지명채권의 입질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전자증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각 질권설정승낙신청서에는 질권설정액의 종목과수량, 금액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전자증권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정한 것과 같이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② 전자증권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는 이 사건 주식의 질물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은 질권설정자가 전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피고가 관리하는 질권설정·해지내역에는 이 사건 계좌의 질권설정 내역과 관련하여 종목코드와 종목명, 등록일 여부가 모두 공란이고 설정수량은 '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질권이 증권업계의 실무상 사용되는 이른바 '계좌질권'으로서 D가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이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을 뿐, 전자등록계좌부가 질물이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특정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위 주식 전부가 질물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질권설정·해지내역에는 이 사건 주식 전부가 질물이라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⑤ 피고는, 질권설정·해지내역에 종목코드와 종목명 등을 공란으로 둔 것은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주식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의미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주식에 관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산시스템이 처분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계좌나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관한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전자증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전자등록,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계좌의 질권설정·해지내역상 '매매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가능'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전산시스템이 처분을 제한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질권설정·해지내역과 계좌별 잔고현황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

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하는 계좌별 잔고현황은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주식의 종목과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위 주식 전부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전자증권법 제31조에서 정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효력

가) D가 C에게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D와 C가 2024. 2. 2.과 2024. 3. 13. 피고에게 질권설정승낙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24. 3. 13.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늦어도 2024. 3. 13. C를 질권자, D를 질권설정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었고 위 질권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자등록된 주식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할 때도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대금으로 발생한 예탁금에 관하여도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과 예탁금 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증권계좌의 예탁금이나 그 반환청구권은 전자증권법에서 정한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전자증권법 제2조 제1호), 달리 증권계좌에 있는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전자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좌에 2024. 5. 13.과 2024. 5. 20. 예탁금 3,774,258,045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2024. 4. 29. 압류명령, 2024. 5. 30. 위 압류명령에 대한 경정 결정, 2024. 6. 5.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가. 3)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C가 2024. 2. 2.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가 2024. 3. 13.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질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C의 이 사건 질권이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우선하므로 피고가 C에게 위 예탁금 3,774,258,045원 중 C가 청구하는 3,760,034,800원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예탁금 14,223,245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14,223,245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4. 4. 29.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이 2024.

5. 3. 09:3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24. 5. 3. 09:30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주식 매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이하 'K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4. 5. 3. 09:30로부터 30분이 경과한 10:00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위반한데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2024. 5. 3. 09:30부터 10:0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위반한데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압류에 관한 우편물을 문서수발 담당부서에서 처음 수령하면, 문서수발 담당부서가 분류작업을 거쳐 이를 법무팀에 전달한 다음 법무팀이 관련 지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전산에 압류 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처음 수령한 다음 이를 전산에 등록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와 같은 증권회사인 K증권도 압류에 관한 우편물을 문서수발 담당부서에서 수령하면, 이를 분류한 후 법무팀에 보내 압류사실을 전산에 등록한다고 회신하였다. K증권의 업무처리 절차는 피고의 업무처리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K증권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압류에 관한 문건을 처음 수령한 때부터 전산에 등록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라고 회신하였다.

③ 피고는 K증권과 피고의 인력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압류명령을 수령하여 전산에 등록하는 데까지 K증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증권이 인력규모의 면에서 피고보다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K증권은 그만큼 매일 수령하는 압류에 관한 문건을 피고보다 많이 수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규모의 점만을 들어 K증권과 피고에게 각 필요한 처리시간을 달리 보기 어렵다. 게다가 증권회사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압류채권자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증권회사가 어느 정도의 인력규모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위 의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질권의 실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4. 5. 3.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을 두고 채무의 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C에게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24. 5. 3. 10:00 이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5. 3. 10:00부터 11:04까지 매도한 이 사건 주식은 519,648주로 그 매매대금은 총 209,821,2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주식매매 내역의 표 24행 이하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209,821,298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5. 3. 10:00 전에 매도 주문을 하였으나 해당 주문에 대한 체결이 10:00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에 관하여는 이를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도 주문이 10:00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주문의 체결로써 비로소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9,821,2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을 계산할 기산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고의 청구를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신주영 배현탁

별 지

별지

주식매각 내역

수량 (단위: 주) = ①	주문시각	체결시각	체결가 (원) = ②	매매대금 (원) = ① × ②
13,000	9:16	9:16	404	5,252,000
500	9:19	9:19	403	201,500
9,398	9:19	9:19	402	3,777,996
41,054	9:19	9:19	401	16,462,654
399,048	9:19	9:19	400	159,619,200
1,260	9:19	9:19	401	505,260
448,740	9:19	9:19	400	179,496,000
3,855	9:20	9:20	401	1,545,855
396,145	9:20	9:20	400	158,458,000
2,150	9:21	9:21	401	862,150
397,850	9:21	9:22	400	159,140,000
24	9:24	9:24	403	9,672
8,318	9:24	9:26	402	3,343,836
121,658	9:26	9:26	400	48,663,200
2,954	9:27	9:27	401	1,184,554
252,560	9:27	9:29	400	101,024,000
25,000	9:29	9:37	402	10,050,000
830	9:30	9:30	401	332,830
69,170	9:30	9:31	400	27,668,000
26,550	9:44	9:57	404	10,726,200
64,445	9:44	9:48	403	25,971,335
42,650	9:49	9:52	403	17,187,950
49,660	9:59	10:41	404	20,062,640

68,990	10:00	10:07	403	27,802,970
26,699	10:13	10:17	403	10,759,697
51,220	10:24	10:40	403	20,641,660
105,839	10:43	10:47	405	42,864,795
10,000	10:46	10:46	404	4,040,000
20,000	10:48	10:48	403	8,060,000
21,120	10:54	10:56	405	8,553,600
32,251	10:56	10:59	405	13,061,655
19,617	10:59	11:01	405	7,944,885
12,866	11:00	11:00	404	5,197,864
20,880	11:02	11:02	404	8,435,520
32,400	11:03	11:03	403	13,057,200
200	11:04	11:04	403	80,600
47,906	11:04	11:04	402	19,258,212
합계(전체)				1,141,303,490
합계(10:00 이후 체결)				209,821,298

1 사명을 2025. 4. '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사명을 2025. 5. I 주식회사에서 J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